

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67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2. 제안이유

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개정(2023. 11. 22. 공포 및 2024. 11. 23. 시행)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인용조문 정비(안 제2조제1항, 제3조제2항제6호의2)
- 나.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관련 조항 삭제(현행 제3조제1항 삭제)
- 다. 건강진단결과서 등 발급 수수료를 3,000원으로 명시(안 별표)

4. 관계법령

- 총리령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리령인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이 2023년 11월 22일 제정되고 2024년 11월 23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2개 자치구는 개정 완료하였고 21개 자치구가 건강진단 수수료를 3,000원으로 개정 추진 중으로,
-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

[시행 2024. 1. 8.] [총리령 제1919호, 2023. 12. 7., 일부개정]

제5조(수수료)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8.>

제5조(수수료)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8., 2023. 11. 22.>

[시행일: 2024. 11. 23.] 제5조.